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重要無形文化材의 保存 傳承)

성경린(成慶麟)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목차(目次)

1.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2.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材) 보존(保存)의 의의(意義)
3. 전수교육(傳授敎育)의 문제점(問題點)
4. 전수교육(傳授敎育)의 개선방안(改善方案)

1.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문화재는 문화 창조 과정의 소산으로 스스로 넓고 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그 좁은 뜻의 문화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즉 학문·예술 등 고도의 정신작용에 의하여 가치가 주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다. 문화재는 다시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등의 유형문화재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그리고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동물·식물·광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기념물, 한편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써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의 이 글에서는 문화재 중에서도 그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에 범위를 국한하고 다시 정부에서 이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평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정부는 1962년 1월10일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1964년 12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여 현재 모두 72종목의 기·예능 보유자 총 166명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으로 규정한 무형문화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규정하고 다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한계(범위)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연극

인형극·가면극

2. 음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의식무·정재무·탈춤·바라춤·승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

5. 기타 태권도·검술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위와 같이 각 항목을 비교적 소상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능에 속하고 역사상·학술상·예술상으로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문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무형의 기예능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무형적인 존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그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현존인에 의하여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정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현존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보유자의 인정, 그것보다는 이미 지정된 모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그 전승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므로 어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그 종목의 보유자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무형문화재의 관리행정이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에 상도하면 아무도 쉽게 그렇다고 여기기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됨으로 이를 위하여 더 한 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래에 차례로 그것을 서술하여 보고자 한다.

2.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의 의의

1964년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3호 꼭두각시놀음 등을 일거에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전후 19년간 각 부문에 걸쳐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는 단체종목 36종, 개인종목이 36종 총 72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각 부문별 현황을 일람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 현황

82. 12. 23 현재

구분 분야별	지정수	보유자수	전수 장학생	이수자
연극	13종	62명	115명	112명
음악	16	41	83	98
무용	5	10	23	29
공예	21	27	49	20
민속	14	23	52	17
기타	3	3	3	4
계	72	166	325	280

위의 도표에서 보듯 각 부문 중 가장 많은 종목이 지정된 부문은 공예기술(21종), 그 다음 음악(16종), 민속놀이(14종), 연극(13종)의 순으로 나타나고 보유자의 인원 분포로는 연극(62명), 음악(41명), 공예기술(27명), 민속놀이(23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소정의 전수를 마친 이수자를 많이 내고있는 부문으로는 연극(112명), 음악(98명)의 순으로 되고 현재 수업중인 전수장학생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문으로도 역시 연극(115명), 음악(83명)이 단연 우세를 보이고 공예기술(49명), 민속놀이(52명), 무용(23명)이 각각 백중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전수장학생, 이수자의 문제보다도 정작 보유자의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일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예능 및 기능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보유자로 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로 나와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보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실사 예능의 측면에서건 또는 공예기술의 측면에서건 원형 보존을 가히 기약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시점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보유자라면 그것은 이미 무용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에 있어 그 제일의 원칙은 철저한 원형의 보존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문화재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길이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문화재의 보존은 알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의 그늘에 가리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일찍이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 「유형문화재의 보수나 발굴은 오히려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지정된 인간문화재의 절반 이상이 60세가 넘는 고령자임에 비추어 이들의 예능 및 기능의 전수야말로 시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한 말은 그대로 옳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는 그 권위와 영예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저들의 기·예능을 전수장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공개 공연, 그 셋째는 기록 작성 등의 일이다. 음악·무용·연극 등의 예능 부문은 1년에 1차 이상 보유자 발표공연을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하여 저들의 작품을 의무적으로 공개시키고 있다.

기록 작성에 관하여는 중요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기록화의 작업은 실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악보, 무보, 사진, 녹음, 녹화 등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영구 보존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이 기록 작성의 일을 허가 사항으로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촬영하거나 악보·대본 등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등을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런 지나친 규제 조항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당국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보유자의 기·예능 전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 조차하다.

그러나 비록 법에 명시는 되지 않았어도 그 기·예능의 전승을 제도화하여 전수장학생을 두고 보유자의 기·예능이 전수장학생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승되도록 한 것과 이러한 제도를 법으로 마련한 것도 천만 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나아가 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도 당해 전수장학생에게 그 기·예능이 원형대로 정확히 전승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여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3. 전수교육의 문제점

보유자의 인정 못지 않게 전수장학생의 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엄정할 것은 다시 이를 필요도 없다. 그것은 비록 오늘의 전수장학생이야말로 내일의 보유자에 그대로 이어져 중요무형문화재의 맥이 되고 있는 사리에서 자명하기 때문이다.

전수장학생의 선정도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다. 1981년 3월 31일 문화재위원회 제 2분과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으로 결정한 것이다.

-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보존단체)의 문하생으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에 소질이 있는 자.
-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계되는 기·예능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 3)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분야별 다음 연령에 해당하는 자
연극분야: 20~35세

무용분야: 20~30세

음악분야: 20~30세

공예분야: 20~35세

민속놀이·제례 기타: 20~40세

그러나 비록 20세 이하의 자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의 선발 인원의 정원은 단체종목은 10인 이내 개인 종목은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은 보유자 또는 보존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정을 보면 소질도 없는 직계 비속, 그것이 아니어도 번연히 소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인의 연고나 정실 등을 앞세워 전수장학생으로 천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다. 전수장학생이야말로 비록 혈연으로의 승계는 아니더라도 어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진하고 깊은 기·예능의 상속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선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한가 하는 것은 남이 가히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한편 국립국악원이나 또는 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과 같은 국·공립 음악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전수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생사업으로 죽기까지 이 길에 헌신할 전문직을 한갓 2중직인 이유로만 규제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이란 대명제에 크게 역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전수학생으로 선정된 자의 전수교육이 과연 어떠한가를 알아볼 차례가 되었다. 저들은 모두 당해종목에 소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좋아서 이 길을 택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예능 전수에 있어 소질과 재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는 새삼스레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성실한 자세와 근면한 노력, 꾸준한 정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먼저 연극부문은 모두 13종목 중 꼭두각시놀음 1종목이 인형극이요, 나머지 12종목이 다 가면극에 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정 당시가 되었던 지정되고 이후부터가 되었던 연극 부문의 변형이요 변질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연극은 음악·무용·연기·대사 그리고 가면과 복식과 그밖에 의물 등으로 구성되는 한 큰 종합예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전수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부문도 정악·민속악을 가릴 것 없이 원형 보존이란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예능 종목이 거의 그렇듯이 대개 보유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전수장학생 또한 복수가 되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랄 수도 있다. 그러나 판소리 등의 경우와는 달라 전통가곡, 전통가사 등의 원형은 어디까지나 한 줄기로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지 두 갈래로 이동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자의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다른 종목도 아닌 전통 가악에 있어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수인 보유자 2명에 또 각기 2명의 전수장학생이 딸리는 바 저들이 비록 한 스승에게 배웠다고 해서 똑 같으리란 보장이 없기는 매한가지여서 바라지 않는 계보는 스스로 또 다른 갈래를 자꾸 파생시키고 있는 잘못을 어떻게 방지하여 조절하고 통합시켜야 할 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다음 무용부문인데 지방으로는 진주의 검무, 충무의 승전무 그리고 서울에는 승무, 처

용무, 학무 등 모두 5종목이 있다. 승무와 학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지정으로 국립국악원에서의 처용무, 진주와 충무에는 각각 민속예술보존회가 있어 열성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어느 종목도 그 춤사위의 원형과 구성의 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진주·검무와 충무·승전무의 경우 반주음악의 미흡을 무엇으로든 빨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적 원형이요 전승이 안전한 것에 처용무를 들 수 있고 한영숙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무나 학무도 저르기 그에 버금할만 하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일단 후계자의 전승에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져서 원형 보존이나 유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점이다. 전수장학생의 연공 또는 숙련도로만 따질 수 없는 실기의 괴리가 도시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니 모를 일이다. 한마디로 전수장학생에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보유자의 태만이 아니면 오도 아니면 저들 쌍방의 책임에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어디에 책임을 물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은 지극히 중난한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민속놀이 부분은 강릉단오제, 은산별신제 등 5종의 무속, 안동 차전놀이 등 역시 5종의 놀이에 속하는 영산 쇠머리대기, 영산 줄다리기 그리고 보다 무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강강술래등 매우 다양하고 다기한 13종목으로 되어 있다. 어느 부문 어느 종목치고 아니 그런 것이 없지만 특히 민속놀이 부분은 그 이어 오는 뿌리가 멀고 오래일 뿐만 아니라 그 놀이로 다져온 겨레의 생활과 사상, 신앙과 풍속의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최근 양주 소놀이굿을 비롯하여 제주 칠머리 당굿·진도 셋김굿 등 직업적 무격의 일인 굿놀이까지도 지정이 되었는데 한낱 무속의 전승이라는 소극적 관념을 떠나 민족의 아득한 신앙의 맥을 길이 보존하게 된 것을 우리 다같이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 같다.

예능부문에 비하여 공예부문의 전승은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듯이 보고 있다. 현재 보유자로 간신히 명맥은 이어오고 있으나 그 전승은 거의 단절의 위기에 있는 것이 전통공예의 현실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정은 되었다고 하나 그 보호 육성정책의 보완이 필요하고 전수장학생이 매어 있다고는 하나 저들의 처지나 환경, 그리고 장래의 전망 등 아직은 결코 밝지 못*한 부문이 이 공예기술이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수장학생의 선발 기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분야에 따라 그 연령을 훨씬 낮추어 조기 교육의 실효를 거두도록 제의하고 싶다.

음악의 경우 「유립」의 음악교육제도를 보면 「콘서어바토리」 「아카데미」 음악고교, 왕립대학 등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세 이전에 유년부에 입학해서 12세 전후 4년 한도의 본과에 진학하는데 졸업은 매년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콩쿠르를 거쳐 입상자만이 졸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도 일정기간의 전수를 마치고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그 합격자만이 이수증을 교부받아 보유자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4. 전수교육의 개선방안

전수교육에 대한 보안이랄까 강화, 나아가 그 철저를 위한 나대로의 소견을 아래에 몇 가지로 서술하여 보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근간이자 주체는 보유자이다. 그러므로

전수교육의 성패는 누가 무어라고 해도 그 첫째는 책임을 보유자가 짊어질 밖에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명백한 사리로 미루어 저간의 이 부분의 전수교육이 문제되어 온 것은 다른 배경이나 요인도 아주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무엇보다 보유자에게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끼울 수 없을 것 같다.

보유자들은 저마다 그가 보유한 예능과 기능의 최고 권위인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 예능과 기능을 최선을 다해 후계자인 전수장학생에게 전수하는 일이 저들의 막중한 의무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전수교육은 체계적 전수가 못되고 「소홀하다」느니 「무리하다」느니 이상있다고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을 이날 어찌지 못하고 있다.

보유자가 전수교육의 주체라고 함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나 보다 훌륭한 교육을 기필하기 위해서는 보유자도 계속 연마에 힘써 이른바 절차탁마가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유자의 거개가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에 속하고 더욱 노쇠·병약으로 말미암아 실제 전수에 장애가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이수자 중에서 조교를 탁용하여 대강의 제도를 연 것은 천만 잘된 이로 환영하고 있다. 보유자 총수 166명 중 40세 이상 60세까지의 사람이 겨우 3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29명 즉 77%에 해당하는 자가 61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 전수교육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필생의 천직으로 삼을 소질있고 성실하고 전통의식 나아가 역사의식에 투철한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고 보조 경비 및 전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문화공보부령으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은 시의를 얻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규정은 특히(전수교육의무)등에 중점을 두고 국고 보조의 폭을 넓히고 그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중 제 7조(전수자 심사평가)는 바로 이 규정이 목적하는 전수교육의 강화를 명문화한 것으로 특히 주목되고 있다. 그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재관리국장은 전수자의 기·예능을 심사평가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는 문화재위원 동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위촉하여 실시한다.
- ③ 심사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소정의 전수교육을 완료한 전수장학생
 2. 교육중인 전수장학생 또는 기타 전수자로서 기·예능의 향상도가 특히 우수하여 보유자 또는 보존단체가 이수조치를 요청한 자
- ④ 문화재관리국장은 심사평가 결과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본적인 기·예능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지 8호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을 교부한다.

그동안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제 3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전수장학생인 경우 심사평가의 인정이 없이도 저절로 이수증이 교부되어 이수자가 되어 왔으나 이 규정의 공포 이후 즉 앞으로의 이수자는 반드시 문화재위원 동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되는 심사 평가에 합격한 자라야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큰 발전인 결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또 현재 당국이 구상 중에 있는 전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즉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강화대책과 더불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각 종목이 소정 5년의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자는 모두 280명으로 되어 있으나 저들이 당해 분야에서 계속 정진토록 특히 우수한 이수자를 선정하여 특별 장려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더욱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의 특혜가

지도 당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전수장학생의 사기를 고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의 제도적 장치는 일단 완료된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고 이제부터는 보유자·전수장학생·이수자가 서로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전수교육의 철저를 기하도록 정진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수장학생은 전통 예능·기능에 있어서 보유자의 상속자라는 자신과 긍지를 잃지 말고 평생교육을 다짐하고 자주적인 학습태도를 항상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